# 한글학교 등록 안내

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

## 1. 등록 신청 조건

○ 설립 주체 :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장*(종교기관의 장을 포함할 수 있음)
- 영리목적 기관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하지 않음

○ 최소 학생 수 : 재외동포 10명* **※ 재외국민 포함**
- 일시 등록학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국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자 기준

○ 최소 수업시수 :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수업*
- 한국어/한국역사/한국문화와 관련된 수업기준

## 2. 신청할 곳 :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

○ 담당 : 이세연(TEL: 8-495-783-2739 / 이메일: all331@korea.kr)

## 3. 제출할 서류

① 재외교육기관(한글학교) 등록신청서(공관 서식)
② 한글학교 현황(공관 서식)
③ 학생 명단(공관 서식)
④ 교사 명단(공관 서식)
⑤ 학사 일정 및 수업 시간표(공관 서식 또는 학교 서식)
⑥ 대표자(설립자) 이력서(공관 서식)
⑦ 학교 정관 또는 규약(자유 서식)
⑧ 시설·설비·교육 기자재 현황(자유 서식)
⑨ 시설 평면도, 배치도, 사진 등(자유 서식)
⑩ 시설 소유 증명서(또는 임대차 계약서) 사본
⑪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(자유 서식)

## 4. 등록 승인 결정

○ 등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류평가, 방문평가 등을 통해 검증 후 승인여부 결정

## 5. 지원금 지급

○ 공관 등록 후 1년 이상인 한글학교

○ 순수 외국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학원식 운영 단체, 노인 대상 문화 센터식 운영, 한글교육 이외 교과목 위주 운영 등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

붙임 :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(발췌)

<붙임>

#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재외국민"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.
2. "재외교육기관"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·한글학교·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.
4. "한글학교"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·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.
5. "재외교육단체"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·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

**제30조(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)**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(한국학교 및 교육원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설치목적
2. 설치장소
3. 대표자
4.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
5.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